

##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
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, 제100조, 제100조의2,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

###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

#### 1. 공고 목적

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 시 선정을 위한 등록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2. 관련 근거

-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-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, 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·방법 등), 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-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91호)

#### 3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업무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

#### 4. 참가자격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**건축분야로 등록된 업체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인 업체**에 한함.

#### 5. 모집기간 및 방법

구분	일정(예정)	비 고
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	2024. 03. 18.(월)	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(www.jpdc.co.kr)
등록 신청서 및 등록명부 제출기간 (약 20일간)	2024. 03. 18.(월) ~ 2024. 04. 01.(월)	<b>우편 및 이메일 접수(마감일 도착분)</b> - 우편: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 담당자 앞 - 이메일: (since225@jpdc.co.kr)
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	2024. 04. 15.(월)	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(www.jpdc.co.kr)

※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#### 6. 제출서류

가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
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

다.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각 1부.

라.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.

마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
## 7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지정결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접수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.
- 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명부 공고일로부터 ~ 2025.04.30.까지입니다.
- 라. 건설공사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우리 공사로 접수된 후 우리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별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.
- 마.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팀(☎ 064-780-3588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